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59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권가혜, 김진우

피고, 상고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백가예

판 결 선 고 2023. 6. 1.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61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89,500,000원에 대하여 2021. 8. 27.부터 2023. 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관한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한 채 위 약정의 유효성을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89,500,000원에 대하여 2021. 8. 2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